

第7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

1992～1996

1992

統 一 院

머 리 말

우리 나라는 지난 30年 동안 政府와 國民이 힘을 합해 6次에 걸친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先進國으로의 진입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分斷克服을 위한 우리 사회의 內的 力量이 크게 성숙되었을 뿐만 아니라 脫冷戰·脫理念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등 통일의 國際的 環境 또한 호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月 19日 第6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는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가 발효되어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交流·協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정세하에서 우리는 지금 남북교류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南北間 信賴回復과 民族共同體 形成基盤을 다져 나갈 것으로써 統一民族社會 建設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에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을 新設하고 남북교류협력 촉진방안과 이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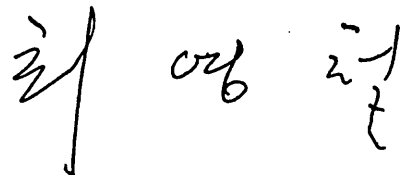
남북교류협력부문계획은 그동안 관계학자, 전문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部門計劃委員會의 檢討 및 관계부처, 연구소와의 調整作業 등 폭넓은 意見收斂을 거쳐 작성·확정된 것입니다.

본 계획은 南北交流協力の 活性化와 制度化를 통하여 南北經濟社會 共同體 形成을 위한 내적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南北間 緊張緩和와 北韓의 改革·開放을 적극 유도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各 分野別 交流 協力 推進計劃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은 상당부분 북한과의 협의 및 합의하에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주변정세 및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計劃推進의 優先順位가 調整되고 경우에 따라 계획의 全面修正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計劃推進 狀況을 수시로 評價, 상황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계획을 운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이 統一을 渴望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진 각계의 뜻있는 분들에게 有用하게 活用되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計劃 樹立에 참여하여 勞苦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紙面을 빌어 진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2年 7月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崔 永 喆

目 次

第 1 章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의 意義와 役割

第 1 節	計劃樹立의 意義	5
第 2 節	計劃의 役割	6
第 3 節	計劃의 推進과 執行	6

第 2 章 '90年代 統一環境 變化와 南北交流協力 展望

第 1 節	'90年代 統一環境의 變化	8
1.	國際情勢의 一般的 趨勢	8
2.	韓半島 周邊情勢의 變化	9
3.	北韓의 變化展望	11
4.	統一環境의 變化와 國內體制의 成熟	13
第 2 節	南北交流協力の 推進現況과 展望	14
1.	南北交流協力 時代의 開幕	14
2.	南北交流協力の 推進現況	15
3.	南北交流協力の 展望	18

第 3 章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의 目標와 推進戰略

第 1 節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이 想定하는 基本前提	19
第 2 節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의 政策基調	20
第 3 節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의 基本目標와 推進戰略	22

第 4 章 南北交流協力の 政策課題別 推進計劃

第 1 節	分野別 南北交流協力の 活性化	24
1.	南北 社會文化共同體 形成을 위한 交流協力	24
가.	離散家族의 相逢 및 自由往來	24
나.	學術 分野의 交流協力	26
다.	體育靑少年 分野의 交流協力	28
라.	文化·藝術, 出版·報道 分野의 交流協力	29
2.	南北 經濟共同體 形成을 위한 交流協力	32
가.	間接交易의 直交易으로의 轉換	32
나.	南北經濟協力の 段階的 推進	34
다.	南北韓 環境保全을 위한 共同協力	43
라.	南北韓 交通·通信網의 連結·擴充	45
마.	觀光 分野의 交流協力	50
3.	南北 經濟社會共同體 示範都市로서의 『平和市』建設	52

第 2 節	南北交流協力の 制度化 基盤造成 및 支援制度 擴充	55
1.	南北當局間 合意書 採擇 및 實踐機構 運營	55
2.	南北交流協力 關聯法令의 整備	56
3.	南北協力基金 擴充	57
4.	北韓關係 情報資料의 段階的 開放	58
5.	北韓의 經濟·社會制度 研究 強化	59

第 5 章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의 後續措置

第 1 節	計劃의 中間評價 및 修正·補完	60
第 2 節	南北 經濟社會共同體의 中長期發展計劃 樹立	60

〈附 錄〉

○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65
○	南北高位級會談 分科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69
○	南北交流·協力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72
○	第 7 次 南北高位級會談 合意文	75
○	南北交流協力 現況	78
○	南北韓 主要指標 比較	82

第 1 章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의 意義와 役割

第 1 節 計劃樹立의 意義

우리는 지난 30年 동안 6次에 걸친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을 수립·추진한 결과, 1人當 GNP가 6千달러를 초과하고 世界 10大 貿易國으로의 浮上, 産業構造의 高度化 등 經濟社會構造의 先進化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經濟社會의 비약적인 發展에 따라 分斷克服을 위한 內的 力量이 성숙되었을 뿐만 아니라, 南北韓 UN 同時加入, 우리와 北方國家間 外交關係 수립, 脫冷戰·脫理念의 새로운 世界秩序 형성 등으로 統一의 國際的 環境 또한 호전되고 있다. 특히 금년 2月 19日 第6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는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가 발효되어 향후 南北關係 改善과 交流協力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經濟社會發展과 南北間의 基本的 合意를 기반으로 역동하는 國際環境 속에서 하루 속히 統一을 실현하여 民族構成員 모두의 自由와 幸福이 보장되는 統一民族社會를 건설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기간 동안 이를 위한 터전을 굳건히 다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 計劃은 既存의 經濟社會發展計劃이 우리 民族社會의 남쪽만을 대상으로 해오던 것을 확대·발전시켜 北韓을 대상으로 한 南北交流協力 分野를 포괄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短期的으로는 統一指向的 平和共存 體制의 정착과 南北韓 同胞의 福祉向上을 도모하고, 長期的으로는 南北 經濟社會共同體 실현 및 均衡發展을 달성하기 위한 靑寫眞을 제시하는 것이다.

第 2 節 計劃의 役割

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役割은 다음과 같다.

첫째, 『南北基本合意書』 채택 등 南北關係의 現實에 기초하여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 南北交流協力の 基本政策方向과 重點課題들을 제시한다.

둘째, 이를 통해 政府의 政策方向의 一貫性を 유지하고 體系的이고 綜合的인 計劃下에 政策遂行의 效率性を 극대화한다.

셋째, 政府의 政策意志에 대한 國民的 合意와 支持基盤을 강화하는 한편, 國民들에게 南北交流協力 事業에 대한 政策方針을 제시한다.

한편, 本 計劃은 統一에 이르는 과정에서 南北間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課題들중 交流協力 分野의 政策方向과 推進方法만을 다루었으며, 여타 중요한 解決課題인 政治, 軍事, 外交 및 國民教育 分野 등은 別途計劃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第 3 節 計劃의 推進과 執行

南北交流協力事業은 우리 政府와 國民들이 一方的으로 추진할 수 없고 상당부분 南北韓當局의 合意와 支援下에 추진될 수밖에 없는 만큼, 計劃의 명확한 目標設定이나 成果의 算術的 評價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國際情勢 및 南北關係의 變化에 따라 計劃의 修正·補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各 分野別 推進計劃의 段階 區分은 南北關係의 進전에 따라 逆順 또는 竝行하여 漸進적으로 조정·추진하도록 하며, 分野別 交流協力事業은 個

人이나 民間團體가 法制度의 테두리 안에서 主體가 되어 政府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南北韓當局間의 合意로 그 安定性和 持續性を 보장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事業의 豫算은 主務部處의 年度別 事業豫算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南北協力基金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第 2 章 '90年代 統一環境 變化와 南北交流協力 展望

第 1 節 '90年代 統一環境의 變化

1. 國際情勢의 一般的 趨勢

'90年代에 접어들어 世界는 이데올로기적 對決에 기초하였던 東西冷戰體制가 解體되고 和解와 協力を 추구하는 새로운 國際秩序가 형성되고 있으며, 向後 國際秩序는 과거의 軍事力에 바탕을 둔 '힘의 均衡'으로부터 經濟力에 바탕을 둔 '利害의 均衡'으로, 또 政治的 兩極體制로부터 經濟的 多極體制로 전환될 전망이다.

아울러 유럽지역의 單一經濟圈(EEA) 구축, 北·南美 經濟圈 결성 움직임 등 國際經濟活動이 地域블럭화되는 추세에 따라 地域國家間 經濟·技術協력과 分業體系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國際秩序 形成過程에서도 UR 協商, 걸프戰爭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國家間 利害關係의 相衝으로 인한 局地的 葛藤 可能性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겠다.

한편, 대다수 國家들이 『民主』와 『福祉』 增進을 國家의 최우선 政策課題로 지향하게 될 것이나, 一部 後進國家들에서는 貧困의 惡循環이 계속됨으로써 『南北問題』는 世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課題로 남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環境』 문제가 國際舞臺의 主要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2. 韓半島 周邊情勢의 變化

가. 東北亞地域 經濟協力體制의 構築

東北亞地域에서는 러시아, 中國의 開放·改革과 더불어 國家들간의 經濟協력이 증대일로에 있으며, 향후 유럽經濟圈의 부상 등 世界經濟의 地域블럭화에 대응하여 東北亞 經濟協力體制 形成이 본격화될 전망인바, 이 地域은 歷史的 傳統, 資源, 技術, 資本 및 30여년간의 成長過程에서 表출된 潛在力으로 보아 향후 世界的으로 가장 중요한 經濟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東北亞 經濟協力體制의 構築이 南北韓間의 分斷과 對決狀態의 해소 없이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南北關係 改善에 대한 周邊國家들의 要求는 점점 더 증대될 것이다.

나. 東北亞地域 安保體制의 새로운 方向 摸索

東北亞地域에서의 지금까지의 安保體制는 韓·美, 美·日의 雙務的 軍事同盟體制와 北韓·舊蘇聯, 北韓·中國의 雙務的 軍事同盟體制를 주축으로 하여 冷戰時代에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東北亞 安保體制의 배경이 되었던 冷戰體制가 全世界的으로 붕괴됨에 따라 향후 새로운 安保體制가 모색될 전망이다.

이러한 過程에서 舊蘇聯의 붕괴로 생긴 공백을 메우려는 中國, 日本의 軍事力 증강이 예상되고 美國의 상대적인 東北亞地域에 대한 軍事的 影響力 감소 가능성이 있으나, 韓半島는 地政學的 位置와 南北分斷의 상황으로 인해 東北亞 安保體制의 主要變數로 작용하면서 韓·美安保體制의 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 周邊 四強의 韓半島政策 方向

먼저 러시아는 體制變革, 經濟難 등으로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나, 向後 事態가 진정되면 太平洋地域에서의 影響力 回復이라는 政治的 目的과 經濟的 難局 打開 및 極東地域 開發 등의 經濟的 目的을 위해, 北韓 위주의 韓半島 政策에서 南·北韓에 대한 等距離政策으로 전환하고 나아가서 南韓의 經濟的 影響力을 고려,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다.

中國은 지속적인 經濟發展을 위해 韓半島의 安定을 원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對北韓 友好關係도 불구하고 韓國과의 關係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政策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財政赤字의 縮小와 軍縮의 一環으로서 長期的으로 駐韓美軍의 減縮을 고려하고 있으며, 對北韓 政策에 있어서도 外交官 接觸 再開 및 水準 格上, 高位人士의 訪北 및 非政治的 民間交流 許容 등 過去의 엄격했던 制限을 점차 완화해 왔는바, 현안인 北韓의 核査察問題가 해결된다면 對北 關係改善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日本은 韓半島에 대한 政治·外交的 影響力 확대를 위해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필요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經濟的으로 장차 형성될 東北亞 經濟圈의 主導的 位置를 先占하기 위해 北韓과의 關係正常化를 타결짓고 經濟協力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3. 北韓의 變化展望

가. 金正日에게로의 權力移讓과 새로운 指導層의 形成

計劃期間中 北韓은 金日成에서 金正日에게로의 權力移讓이 있게 될 것이며, 이는 北韓 權力 内部에 指導力의 弛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처하여 金正日 體制는 住民들에 대한 政治思想 教育을 강화하는 한편, 住民들의 經濟生活 向上 등을 통한 새로운 리더쉽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나. 經濟沈滯의 持續과 外交的 孤立 脫皮를 위한 對外開放의 摸索

北韓은 70年代 後半 以後 급격히 둔화된 經濟成長, 資本 및 技術不足으로 인한 成長潛在力의 限界, 住民生必品の 絶對的 不足 등으로 심각한 經濟難에 직면하고 있는바, 실제로 北韓經濟는 '86~'89年 사이에 平均 2.7%의 低成長을 기록하다가 '90년에는 -3.7% 成長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北韓經濟의 沈滯現象은 러시아의 對北韓 經濟政策 變化가 본격화되는 '92年 以後 加速化되어 本 計劃期間中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北韓은 社會主義圈 國家들의 改革·開放과 對韓關係 正常化로 인해 심각한 外交的 孤立感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社會主義圈 一邊倒의 既存 對外政策의 修正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本 計劃期間中 北韓은 經濟難 解決과 外交的 孤立 脫皮를 위해 美·日 등 西方國家들과의 關係改善 및 經濟協力에 박차를 가하는 등 對外政策에 있어서 實利 追求의 變化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住民들에 대한 思想統制의 強化와 對南戰略의 部分的 修正

『南北基本合意書』의 채택·발효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對內·對南 政策基調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즉, 對南戰略에 있어서는 合意書 採擇으로 인한 실질적 南北關係 改善이 北韓社會의 開放과 직결되는 것을 극력 기피하면서 體制維持에 유리한 범위내에서 制限的 南北交流協力에 호응해 올 것이며, 對內的으로는 對外開放 및 權力移讓에 따른 住民思想 統制와 政治教育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中長期的으로는 韓·中 修交, 日·北韓 修交, 美·北韓 關係改善 등 對外與件의 變化, 우리 사회의 內的 力量 成熟에 따른 既存 對南戰略의 실질적 기반 상실, 金正日 權力承繼 以後 經濟力 再建 등 南北經濟協力の 內的 必要性 증대 등과 같은 對內外 與件變化에 직면하여 計劃期間中 對南戰略의 部分 修正이 불가피할 것이다.

計劃期間中 對外開放, 權力承繼 등으로 인한 北韓의 潛在的 變化 可能性을 살펴보면,

첫째, 現在와 같이 開放·改革을 거부하고 自力更生路線에 입각한 既存政策을 지속하면서 制限的 開放만을 모색하는 形態,

둘째, 北韓 指導層이 世界情勢의 變化를 수용하고 內部體制의 矛盾을 극복하기 위하여 秩序있는 體制改革과 開放을 추진하는 形態,

셋째, 內部的 不滿 또는 支配階層의 衝突로 인하여 北韓社會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變化를 겪는 形態 등으로 類型化할 수 있을 것이다.

4. 統一環境의 變化와 國內體制의 成熟

計劃期間中 對外的으로는 南北關係가 진전되고 東北亞 地域協力體制가 可視化됨에 따라 東北亞 地域國家들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나, 美國·유럽 등 先進國家들의 市場開放 壓力과 國際社會 役割分擔 要求의 증대 등 새로운 挑戰的 要素도 발생할 것이다.

우리 社會 内部的으로는 民主化 措置가 더욱 확대되어 90年代 中盤까지는 사회 전반에 民主秩序가 정착될 것으로 보이며, 產業構造의 再編, 社會保障制度의 擴大 등 社會經濟的인 질적 變化를 통해 地域間 및 階層間 葛藤과 疎外問題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民主化의 進展과 產業構造의 深化過程에서 새로운 國民적 期待와 欲求가 상승함으로써 福祉, 衡平, 環境 등의 문제를 둘러싼 過渡期的 葛藤과 混亂이 야기될 소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對內外 環境 變化와 統一與件의 成熟에 따라 國民들의 統一論議는 民族再結合이라는 當爲的, 感性的 次元의 요청에서 統合 後 經濟社會制度和 政策方向 등 現實的이고 理性的 次元의 問題로 구체화될 것이나, 南北韓 社會의 相互開放이 확대됨에 따라 社會經濟的 異質化를 확인함으로써 心理的 衝擊이 과생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第 2 節 南北交流協力の 推進現況과 展望

1. 南北交流協力 時代의 開幕

南北韓間에 交流協力を 위한 提議와 努力은 60年代 以後 계속되어 왔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當局間 會談이 '71年 離散家族의 自由往來와 相逢 등을 위한 赤十字會談을 위시로 하여 體育·經濟 등 다방면에 걸쳐 進行되었으나 基本的인 合意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5共和國에 접어들어 '84年 北韓의 對南水災物資의 提供,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및 藝術公演團의 相互交換訪問이 성사되기도 하였으나 그외에는 단절된 膠着狀態가 이어져 왔다.

6共和國 出帆과 더불어 政府는 南北韓間의 合意에 의한 南北間 交流協力の 실현이 한계에 부딪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一方的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우선 추진하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南北間 緊張과 對決關係를 청산하여 交流와 協力の 새 時代를 열어가기 위한 前向的 措置들을 실천해 왔다.

政府는 『7.7 特別宣言』('88年) 以後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基本指針』('89. 6. 12),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法律』('90. 8. 1)을 제정·시행함으로써 正當한 南北交流協力を 전면 개방하고 이를 法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90年 8月 1日 에는 『南北協力基金法』을 제정하여 南北間의 交流協力 促進을 지원하기 위한 目的에서 南北協力基金을 조성·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수차례의 南北高位級會談 개최를 통해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력에 관한 合意書』를 채택하고('91. 12. 13 채택, '92. 2. 19 발효), 南北

交流協力の 協議・實踐機構인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92.3.18)와 經濟 및 社會文化分野 2個 『共同委員會』('92.5.18)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南北交流協력이 본격화될 수 있는 制度的 基盤을 마련하였다.

2. 南北交流協力の 推進現況

가. 推進現況

『7.7 特別宣言』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法的 保障裝置가 마련된 이후 在外國民들은 별다른 제한 없이 北韓을 訪問하여 民族共同體 回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南北住民間의 接觸・往來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南北人的往來는 '89年 6月 12日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基本指針』 제정 以後 '92年 6月末까지 南北會談, 體育・藝術交流 등을 중심으로 北韓住民의 南韓訪問이 559명, 우리 住民의 北韓訪問이 539명 성사되었고, 南北住民間 接觸은 離散家族 相逢, 國際學術會議 參加 등 378건이 성사되었다.

南北間의 交易面에서는 北韓의 否定的 姿勢와 産業基盤의 脆弱性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88年 10月 7日 對北韓 經濟開放 措置 以後 '92年 6月末까지 承認額 基準으로 3억4천8백 만달러에 달하는 물자가 交易되었고 그 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體育分野에서는 '92年度에 世界卓球大會와 靑少年蹴球大會에서 南北韓이 單一팀을 구성・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民族的 一體感과 自矜心を 높여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第7次 南北高位級會談('92.5.5~8, 서울)에서 『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및 藝術團 交換』사업이 합의되어 금년 8.25~28間(3泊 4日) 南北 同時交換訪問

이 실현될 예정이다.

〈南北交流協力 推進實績('88.10~'92.6)〉

區 分		計	主 要 內 容
人的 交流	住民 接觸	1,306件 3,544名	離散家族, 學術, 文化, 經濟分野 등
	人的 往來	32件 1,123名	南北高位級會談, 蹴球交換競技, IPU代表團, 서울女性세미나 參席 등
	物的 搬入	641件 307,654千불	金·銀, 亞鉛塊, 열연코일, 無煙炭, 시멘트, 韓藥材, 農水產物 등
物的 交流	搬出	70件 40,058千불	잠바, 설탕, 양말면직기, 쌀, 電子製品 등
	計	711件 347,712千불	
協力 事業	事業者 承認	3件	○ 體育分野(2) ○ 學術分野(1)
	事業 承認	2件	○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單一팀 ○ 世界青少年蹴球大會 單一팀

※ 承認實績 基準임.

나. 評 價

7.7 特別宣言 이후 南北韓間 接觸과 交流協力에서 부분적 성과가 있었으나, 平和統一을 위한 外的 與件의 成熟과 國民的 輿望에 비추어 볼 때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성사된 交流協力の 特徵을 살펴보면,

첫째, 人的往來는 南北當局間 會談과 北韓當局이 統制可能하고 對南戰略面에서 利用可能한 一回性 交流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둘째, 北韓住民 接觸은 第3國에서의 접촉, 특히 國際學術會議 參加나 仲介人을 통한 접촉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셋째, 物資交易은 第3國을 통한 間接去來方式으로 農水產物, 鑛產物, 鐵鋼·金屬 등 一次產品과 中間原資材의 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 政府의 全面開放 政策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南北交流協力の 實績이 저조한 요인은,

첫째, 基本的으로 南北韓間的 개방으로 인해 北韓住民들에게 미칠 충격을 우려하여 전면적 開放과 交流를 거부하고 있는 北韓의 消極的 姿勢,

둘째, 人的交流에 있어서는 北韓이 다각적이고 자주적인 交流를 내세워 諸般 交流와 協力을 政治的 目的에서 對南革命戰略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北韓의 外換不足과 交易對象品目 限定, 北韓 貿易慣行의 後進性, 間接 交易으로 인한 非經濟性 등 南北의 經濟力 隔差와 體制相異에서 오는 構造的 制約要因,

넷째, 當局間 合意와 保障이 없는 間接方式 交流協力으로 인한 安定性과 持續性 限界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南北交流協力の 展望

수차례에 걸친 南北高位級會談을 통하여 『南北基本合意書』가 발효되고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및 分野別 共同委員會가 구성됨으로써 의견상 南北交流協力の 전망은 밝아졌으나, 短期的으로는 制限的 交流協力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南北間에는 第3國에서의 接觸, 間接方式의 物資交易이 지속될 것이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直交易 및 經濟協力事業의 추진과 함께 北韓 住民들에게 미칠 衝擊이 적고 北韓當局이 統制可能한 형태의 交流가 體育·文化分野를 중심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中長期的으로는 對内外 與件變化와 北韓의 對外開放 擴大로 南北交流協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경우에도 北韓은 南北韓 住民들의 自由往來 등 人的交流에 대해서는 계속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直交易, 合作工場 設置 등 經濟分野에서의 交流協力を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第 3 章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의 目標와 推進戰略

第 1 節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이 想定하는 基本前提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은 그 施行期間中 현재와 같은 和解와 協力の 世界潮流가 지속될 것으로 前提하고 있다. 특히 東北亞國家間에는 經濟分野의 交流協력이 크게 증가하고 政治的 關係도 상당한 정도 발전되어 南北交流協력에 肯定的 影響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計劃期間中 우리 社會에서는 南北關係 改善과 交流協力の 具體的 成果를 기대하고 촉구하는 各界各層의 努力이 계속되고, 政府의 積極적 南北交流協力 推進政策에 대한 國民的 支持基盤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한편 南北交流協力の 추진에 있어서 상대인 北韓은 당분간 體制의 維持와 安定을 위해 改革·開放에 소극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經濟沈滯를 탈피해야 하는 內的 必要와 周邊與件의 變化에 따라 計劃期間中에 對南戰略의 部分的 修正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計劃期間中 北韓의 開放으로 인한 變化를 여러 형태로 예상할 수 있으나, 北韓 指導層이 世界情勢의 變化를 수용하고 內部體制의 矛盾을 극복하기 위하여 制限的이나마 自律的인 體制改革과 開放을 추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本 計劃은 前提한다.

第 2 節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의 政策基調

6共和國 出帆 以後 政府는 大統領의 『7.7 特別宣言』과 第43次, 第46次 유엔 總會 演說 등을 통해 지난 40여년 동안 지속되어온 緊張과 對決의 南北關係를 淸산하고 交流와 協力の 새 시대를 열겠다는 政策意志를 淸명하는 한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표('89.9.11)를 통해 南北關係 發展의 基本方向과 統一國家의 靑寫眞을 제시하였다.

지난 半世紀 동안 不信과 對決을 지속해온 民族社會를 平和的으로 統一하기 위해서는 南北間의 對話와 交流協力を 통해 상호간의 對決構造를 平和構造로 전환하고, 異質化된 民族社會의 同質性을 회복하여 民族共同體를 형성·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統一國家를 수립하는 길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나아가 南北間 交流協력을 통해 우리 民族이 共同體 關係를 회복·발전시켜 國際社會에서 共存共榮하며 民族的 利益을 보호·증대하고, 특히 東北亞地域 協力體制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國際的 地位와 役割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政策方向을 바탕으로 마련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南과 北이 對話와 交流協력을 추진함으로써 信賴回復을 도모해 나가는 가운데 南北頂上會談을 통해 民族共同體 憲章을 채택하고, 過渡期的 統一體制인 『南北聯合』을 거쳐 완전한 統一國家를 수립하는 것을 基本骨格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段階別 政策課題를 중심으로 南北交流協力の 推進構圖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으며, 第7次 5個年計劃 期間中에는 南北交流協力 基盤造成 段階에 상응하는 政策課題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第 3 章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의 目標와 推進戰略

第 1 節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이 想定하는 基本前提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은 그 施行期間中 현재와 같은 和解와 協力の 世界潮流가 지속될 것으로 前提하고 있다. 특히 東北亞國家間에는 經濟分野의 交流協력이 크게 증가하고 政治的 關係도 상당한 정도 발전되어 南北交流協력에 肯定的 影響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計劃期間中 우리 社會에서는 南北關係 改善과 交流協力の 具體的 成果를 기대하고 촉구하는 各界各層의 努力이 계속되고, 政府의 積極적 南北交流協力 推進政策에 대한 國民的 支持基盤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한편 南北交流協力の 추진에 있어서 상대인 北韓은 당분간 體制의 維持와 安定을 위해 改革·開放에 소극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經濟沈滯를 탈피해야 하는 內的 必要와 周邊與件의 變化에 따라 計劃期間中에 對南戰略의 部分的 修正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計劃期間中 北韓의 開放으로 인한 變化를 여러 형태로 예상할 수 있으나, 北韓 指導層이 世界情勢의 變化를 수용하고 内部體制의 矛盾을 극복하기 위하여 制限的이나 自律的인 體制改革과 開放을 추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本 計劃은 前提한다.

第 2 節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의 政策基調

6共和國 出帆 以後 政府는 大統領의 『7.7 特別宣言』과 第43次, 第46次 유엔 總會 演說 등을 통해 지난 40여년 동안 지속되어온 緊張과 對決의 南北關係를 淸산하고 交流와 協力の 새 시대를 열겠다는 政策意志를 천명하는 한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표('89.9.11)를 통해 南北關係 發展의 基本方向과 統一國家의 靑寫眞을 제시하였다.

지난 半世紀 동안 不信과 對決을 지속해온 民族社會를 平和的으로 統一하기 위해서는 南北間의 對話와 交流協力を 통해 상호간의 對決構造를 平和構造로 전환하고, 異質化된 民族社會의 同質性을 회복하여 民族共同體를 형성·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統一國家를 수립하는 길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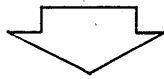
나아가 南北間 交流協력을 통해 우리 民族이 共同體 關係를 회복·발전시켜 國際社會에서 共存共榮하며 民族的 利益을 보호·증대하고, 특히 東北亞地域 協力體制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國際的 地位와 役割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政策方向을 바탕으로 마련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南과 北이 對話와 交流協력을 추진함으로써 信賴回復을 도모해 나가는 가운데 南北頂上會談을 통해 民族共同體 憲章을 채택하고, 過渡期的 統一體制인 『南北聯合』을 거쳐 완전한 統一國家를 수립하는 것을 基本骨格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段階別 政策課題를 중심으로 南北交流協力の 推進構圖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으며, 第7次 5個年計劃 期間中에는 南北交流協力 基盤造成 段階에 상응하는 政策課題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南北交流協力 推進構圖〉

南北交流協力 基盤造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南北協議機構를 통한 交流協力 制度化○ 分野別 交流協力の 活性化○ 北韓體制的 改革・開放 誘導○ 『南北聯合』에 對備한 內的基盤 造成



『南北聯合』 制度化로 平和統一 基盤造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南北 自由往來・全面開放 實現○ 南北 經濟社會共同體의 形成○ 南北韓 經濟社會制度的 同質化 追求○ 國際社會에서의 南北協力を 통한 共同利益 追求



統一國家 樹立
<ul style="list-style-type: none">○ 南北韓 政治共同體의 形成○ 南北韓 經濟・社會 均衡發展 追求○ 民族成員 모두의 福祉增進○ 國際協力과 世界平和 維持에 積極 參與

第 3 節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의 基本目標와 推進戰略

本 計劃은 基本目標를 交流協力の 活性化 및 制度化를 통하여 南北 經濟社會 共同體의 內的 基盤을 조성하고, 南北間 緊張緩和와 北韓의 改革·開放을 유도 하는 데 두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基本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政策課題로서,

첫째, 離散家族, 經濟, 社會文化, 通行·通信 등 分野別 南北交流協力の 活性化,

둘째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南北當局間 合意書 채택, 南北協力基金 확충 등 南北交流協力の 制度化 基盤造成 및 支援制度의 擴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本 計劃의 推進戰略은,

첫째, 南北交流協力を 統一國家 형성의 主要手段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南北交流協力 확대를 통해 北韓의 開放을 촉진하고, 南北 相互補完的인 利益構造를 형성함으로써 實質的인 民族共同體 形成 與件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둘째, 〈 交流 ⇒ 協力 ⇒ 同化 ⇒ 統合 〉의 段階的 接近方式을 지향하되 狀況變化에 伸縮的으로 대응하고, 政策의 一貫性·繼續性を 견지하면서 北韓의 立場을 고려한 柔軟한 交流協力を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過程에서 우리의 一方的 措置가 가능한 事業은 先導的으로 실천함으로써 北韓의 開放과 交流協力에의 同參을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다.

셋째, '92年 2月 19日 第6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발효된 『南北基本合意書』를 바탕으로 하여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와 部門別 共同委員會를 本 計劃期間 中 南北間 交流協力對策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갈 基本的 機構로 운영하며, 여

기에서 離散家族, 通行·通信, 經濟, 社會文化 等 各 分野의 具體的 履行對策을 담은 『附屬合意書』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細部合意書』를 채택해 나감으로써 交流協力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講究해 나가게 될 것이다. 民間의 交流協力도 이러한 當局間의 合意를 바탕으로 秩序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 政府와 民間의 役割을 正립하고 긴밀한 事前協議 體制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넷째, 中長期的 次元의 南北統合에 대비한 綜合的 對應態勢 구축을 위하여서는, 各 分野別로 實務次元의 統合對備計劃을 체계 화하고, 에너지, 國土開發計劃 等に 南北統合對備計劃을 반영하며, 北韓의 通貨·金融制度, 社會福祉制度 等に 대한 調查研究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第 4 章 南北交流協力の 政策課題別 推進計劃

第 1 節 分野別 南北交流協力の 活性化

1. 南北 社會文化共同體 形成을 위한 交流協力

가. 離散家族의 相逢 및 自由往來

(1) 推進現況

南北間에는 離散家族 問題解決을 위한 赤十字會談이 '71년부터 시작되어 지난 20餘年 동안 10次的 本會談과 수십차의 實務接觸, 豫備會談이 進行되었다.

그러나 離散家族 問題解決의 重要性에 대한 基本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南北 赤十字會談은 '85年 단 한 차례의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交換만을 성사시켰을 뿐 교착과 중단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부모형제를 그리는 離散家族들의 熱望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바, '90年 『8.15 民族大交流』를 위한 訪北申請期間 동안 접수된 訪北希望者 61,355명 중 70% 이상이 高齡者와 離散家族이었고, '89年 6月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 발표 以後 '92年 6月末까지 南北住民間 接觸 申請件數(1,501件)의 34%(507件)가 離散家族들의 書信交換 및 第3國에서의 家族相逢을 희망하는 것이었다.

최근들어 第3國을 통한 書信傳達과 相逢이 상당수 성사되고 海外僑胞들의 北 韓訪問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第7次 南北高位級會談('92.5.5~5.8, 서울)에서는 '92年度 光復節을 계기로 南北間에 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및 藝術團을

상호교환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雙方 赤十字團體에 委任키로 함으로써 '85年度에 이어 두번째로 소규모로나마 離散家族 故郷訪問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92.8.25~28 동시 교환방문 예정)

(2) 推進方向

南北 離散家族 問題는 南北當局間 구체적 履行對策을 마련한 바탕 위에서 쌍방 赤十字團體가 이를 이행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當局間 合意와 履行에 다소 時間이 걸릴 것을 감안하여, 直·間接的 對話채널을 통해 기존의 第3國을 통한 離散家族 所在把握 및 再會事業을 계속 지원·확대해 나가는 한편, 故郷訪問團 交換事業을 定例的으로 확대·추진해 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 離散家族들의 相逢 및 自由往來와 再結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推進計劃

離散家族 問題解決의 첫단계로서, 먼저 南北交流·協力分科委에서 작성하는 『附屬合意書』에 離散家族 自由往來·相逢, 書信去來, 再結合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쌍방의 赤十字團體를 통하여 이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南韓 內 離散家族 現況의 체계적인 파악과 함께 海外僑胞 및 第3國의 仲介者를 활용한 離散家族 所在把握 및 消息交換과 再會事業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南北間에 合意書 채택을 통하여 板門店에 離散家族面會所와 郵便物交換所를 설치함으로써 南北 離散家族의 相逢과 書信往來를 정리화시키고, 高齡 離散家族부터라도 故郷訪問 自由化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自由往來가 실현되기 이전에는 『離散家族 故郷訪問團 交換』을 계속 추진해 나감으로써 離散

家族들의 고통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경감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에 人的往來·接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 따라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相逢과 往來가 우선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한편, 이산가족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再結合 및 移住에 대한 南北共同對策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學術 分野의 交流協力

(1) 推進現況

南北間 學術 分野의 交流는 第3國 개최 國際學術會議에의 공동참여를 통한 南北韓 學者間 接觸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89年 6月 以後 '92年 6月 末까지 이 분야에서의 南北間 接觸은 총 221件 신청에 200件이 승인되어 47件이 성사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비록 성사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南北大學·研究所間의 姉妹結緣 및 研究員들의 相互交換에 대한 우리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申請內容에 있어서도 考古學, 建築學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北韓은 南北學術交流가 北韓住民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 우리측의 提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經濟 등 北韓이 관심이 있는 分野의 交流가 활성화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學術 分野의 交流에도 응해올 것으로 예상되며, '92年 6月에는 南北間 한글 機械化를 위한 로마자 表記 單一化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2) 推進方向

이 分野의 交流協力 推進方向은 먼저 南北交流·協力分科委와 共同委에서 合意書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大學, 研究機關, 學問分野別 學會 등 民間이 주체

가 되어 政府와의 협의하에 추진토록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民族同質性的 회복과 相互理解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純粹學問 分野의 交流協力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南北關係에 惡影響을 미칠 수 있는 政治·軍事·理念分野는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基本方向下에 第3國 개최 國際學術會議에의 南北 共同參與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南北韓 開催 學術行事に의 相互招請, 各 分野 學術 研究의 成果와 情報의 相互交換, 學者·教育者·學生 交流, 共同調查研究 및 편찬사업 등 구체적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3) 推進計劃

1 段階로 우선 南北交流·協力分科委와 共同委에서 當局間 合意書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第3國 開催 國際學術會議 共同參加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과 아울러, 國內 개최 學術行事に 北韓 學者·學生 招請 및 參與를 유도하며 南北 教育者·學生 訪問團 相互交換, 學術 分野 情報資料의 相互交換, 『南北大學生 祖國巡禮大行進』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段階에서는 古代史, 言語學, 民俗學 등 非政治的 分野의 共同研究를 실시하고, 유네스코 관계 국제회의 등 國際 教育·文化行事的 南北共同開催를 추진하며, 大學·研究所間 姉妹結緣과 教育者·學生의 交換事業을 확대·실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3 段階에서는 『南北教科書共同編纂委員會』(가칭)를 구성, 地理·數學 등 非政治的 分野 教科書を 共同編纂하는 등 『南北聯合』 실현에 대비한 交流協力を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 體育靑少年 分野의 交流協力

(1) 推進現況

體育分野의 交流協力は '90年 北京亞洲大會에서의 共同應援이 계기가 되어 分斷 以後 最初로 統一蹴球大會가 平壤과 서울에 번갈아 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南北體育交流와 國際大會 單一팀 構成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體育會談이 개최되어 '91年度에는 2개 주요 國際大會에 南北單一팀을 구성·참가함으로써 體育交流는 한 차원 높은 協力段階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진정한 의미의 靑少年交流는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2) 推進方向

먼저 體育交流는 南北間의 直接交流에 역점을 두고 주요 國際大會 單一팀 구성·참가와 相互支援, 協力事業 등 다방면의 交流協력을 병행 추진하며, 北側의 立場과 與件을 감안하여 實現性 위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種目別 親善競技 개최, 單一種目 國際大會 單一팀 참가 등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제한적 交流協력을 활성화함으로써 相互 信賴回復 및 交流協力の 慣例를 확립하는 한편, 南北 當局間 合意書 채택을 통해 體育交流를 제도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綜合國際大會 南北單一팀 참가, 南北 綜合體育大會 개최, 南北 體育人·團體間의 相互交流 등 國民體育交流 형태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靑少年交流는 統一國家의 主役 養成 次元에서 非政治的이며 합의하기 쉽고 실현이 용이한 분야부터 段階的으로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3) 推進計劃

1 段階로 合意書 채택을 통하여 南北韓이 개최하는 國際行事に의 相互參加와 種目別 親善競技 開催 및 定例化를 유도하고, 單一種目 國際大會의 單一팀 구성·참가 및 共同訓練을 실시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상대측이 國際體育行事を 유치코자 할 경우, 이에 相互協調토록 하며, 쌍방이 개최하는 靑少年行事に 相互招請 및 『우정의 한마당』, 『靑少年大行進』 등 南北 共同主管 靑少年行事を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段階로 綜合國際大會에 南北單一팀을 구성·참가토록 하며, 體育 및 靑少年 분야 關係者 相互訪問과 指導者 交換, 南北 合同訓練 및 相互 轉地訓練을 실시하는 한편, 體育學術會議의 共同主催, 南北 靑少年間 理解增進을 위한 행사의 정례적 개최 등 事業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段階에서는 南北韓 體育團體間 聯合機構의 설치·운영, 國際體育行事的 공동유치·공동주최, 種目別 選手權大會·綜合體育大會의 공동주최 또는 윤번주최를 추진해 나가고, 『南北靑少年 만남의 廣場』(가칭)을 설치·운영함으로써 韓民族공동체 형성기반을 다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 文化·藝術, 出版·報道 分野의 交流協力

(1) 推進現況

南北間에는 '85년에 藝術團의 相互交換公演이 있었으며, '90년에도 南北韓 傳統音樂團이 交換公演을 한 바 있다.

또한 뉴욕 南北映畫祭 개최('90.10), 南北合同禮拜('91.2, 豪洲), 東海國際 藝術祭('91.5, 日本) 등 第3國에서의 南北韓 文化·藝術·宗教人들의 接觸이 증대되어 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백두산·금강산 記錄映畫 共同製作, 南北美術祭, 文人·寫眞家 交流 등 다방면에 걸친 文化·藝術 分野의 交流協力이 모색되고 있으며, 報道·出版交流도 남북간의 情報交流를 위한 基本적 요소라는 점에서 『南北基本合意書』에 交流對象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2) 推進方向

文化·藝術 分野의 交流는 傳統文化의 발굴과 보존이라는 接近方式에서 출발하여 南北文化에 대한 相互理解의 증진 ⇒ 文化的 同質化의 추구 등으로 交流協力の 質的 深化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分野는 南北間 異質的인 體制의 政治·思想性이 깊이 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內容과 形式에 있어서 南北이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出版 分野는 相互主義 原則에 따라 非理念的인 分野부터 단계적으로 開放과 交流를 추진해 나가며, 報道分野는 言論人 相互訪問 및 制限的 取材에서 시작하여 情報資料 交換, 프로그램 共同製作段階를 거쳐 新聞·放送社의 支社 設置, 記者 常駐의 단계로까지 확대·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3) 推進計劃

1 段階로서 南北間에 이 分野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를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南北 共同記念日·名節에 南北 民俗公演團·交響樂團 등의 교환공연을 추진하며, 南北 所藏文化財의 交換展示會 개최와 文化·藝術資料의 상호교환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國際的 文化·藝術 行事に 공동으로 참가하는 한편, 南北 宗教行事의 상호지원 및 宗教人들의 交流를 활성화시키고, 出版·報道分野 情報資料 交換과 南北 言論人의 相互訪問 및 주요 계기마다 制限的 取

材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 段階에서는 傳統文化의 발굴·계승을 위한 民族文化 共同研究 및 編纂事業을 추진하고, 南北 純粹藝術 作品의 交換展示會를 개최하며, 文化·藝術團體間의 姉妹結緣과 南北 合同藝術團의 海外巡廻公演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南北 文化·藝術·宗教行事의 공동개최와 女性 中心의 傳統文化 交流 및 공동개발, 南北韓 放送의 文化프로그램 상호교환 방영을 실시하고, 나아가 放送프로그램의 공동제작과 國際競技大會 등 國際行事의 共同取材를 추진할 계획이다.

3 段階에서는 南北間 文化·藝術 研修生을 교환하며, 相對方地域에 新聞·放送社의 支社 설치·운영과 記者의 常駐까지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2. 南北 經濟共同體 形成을 위한 交流協力

가. 間接交易의 直交易으로의 轉換

(1) 推進現況

'88年 10月 우리 政府의 對北韓 經濟交流 許容方針 發表 以後 南北間 物資交易은 꾸준히 증대되어 '92年 6月末 현재 총 交易额이 3億4千8百萬달러(承認基準)에 달하게 되었다.

南北 物資交易은 南北韓의 對外交易規模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낮은 수준으로 初步的 段階에 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91년에는 전년에 비해 7.7배의 交易额 증가를 보였다.

〈年度別 交易現況〉

(單位:千\$, 承認基準)

年 度 別	搬 入	搬 出	合 計
'88	1,037	0	1,037
'89	22,235	69	22,304
'90	20,354	4,731	25,085
'91	165,996	26,176	192,172
'92 (1~6月)	98,032	9,082	107,114
合 計	307,654	40,058	347,712

南北韓 物資交易은 지금까지 대부분 第3國을 통한 間接交易 中心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向後 直交易이 본격화되면 交易量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南北韓 交易品目 開發

지금까지의 南北交易 推進過程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할 때, 南北 交易의 확대를 위해서는 交易可能品目を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北韓의 對日·對蘇 輸出入 商品構造, 現行 南北間 交易商品, 南北經濟會談時 意見接近品目 등을 근거로 南北交易 可能品目を 설정해 보면, 搬入品目으로 無煙炭, 鐵鑛石, 마그네시아크링카, 亞鉛塊, 니켈, 알루미늄塊, 명태, 生絲, 韓藥材, 옥수수 등을 들 수 있으며, 搬出品目으로는 鐵鋼材, 織物類, 소금, 쌀, 감귤, 水産物, 폴리에틸렌, 비누, 양말, 직조기, TV 등 電氣製品, 석유·경유 등 油類, 肥料, 基礎 醫藥品 등이 유망할 것이다.

(3) 推進方向

南北 物資交易의 重點方向은 現행 間接交易을 直交易으로 전환하는 것인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南北交易은 內國間 去來라는 기본인식하에 南北交流·協力分科委와 共同委에서 合意書의 채택을 통하여 南北 經濟交流의 制度化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南北韓이 産業, 貿易構造上的 相互補完性 제고를 통해 經濟共同體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되, 北韓의 經濟沈滯 및 外換不足 등 交易의 制約條件을 고려하여 交易 初期에는 比較優位에 입각한 交易과 北韓立場을 고려한 水平的 分業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南北間의 交易方式은 清算決濟方式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決濟方式도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價格, 交易量, 決濟通貨, 輸送, 關稅에 관련된 事項에 대해서도 南北當局間 合意를 통하여 南北交易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南北韓 物資交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交易에 필요한 基本的인 通信 및 輸送網의 연결·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北韓 經濟情報資料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對北交易으로 인한 損失補助 등 다각적인 支援保障 手段을 확대 운용하는 한편, 南北間 交易規模가 증대할 경우, 非武裝地帶 일부 또는 이에 인접한 南北韓 特定地域을 『平和區域』으로 설정하고 이 地域內에 南北韓 共同自由市場의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交易과 經濟協力事業을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交易商品의 안정적인 消費·供給體系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4) 推進計劃

1 段階로 먼저 南北當局間 經濟分野 合意書 締結을 추진하는 한편, 北韓 產業情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交易業體에 제공하고, 第3國에서의 南北 經濟人 交流를 지원·활성화시키면서, 剩餘農產品 등 相互補完的 物品에 대한 南北間 直交易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2 段階에서는 南北 합의하에 清算決濟銀行 지정과 貸越制度(Swing) 운용, 直交易港 지정, 民間經濟團體 중심의 產業視察團 교환 등 南北韓 經濟人들간의 相互訪問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直交易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3 段階에서는 南北間 전면적인 直交易이 실현되고, 共同自由市場 개설도 추진될 것이다.

나. 南北經濟協力の 段階的 推進

(1) 推進現況

南北經濟協力事業은 南北經濟會談(1984.11~1985.11)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과 더불어 地下資源 共同開發, 南北 共同漁撈區域 設定 등 協力對象 分野에 대한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89年 1月에는 現代그룹과 北韓 조선대성은행 사이에 金剛山 共同開發 및 共同對外進出에 대한 議定書를 교환하였고, '92年 1月에도 (株)大宇와 北韓의 조선삼천리회사 사이에 남포경공업단지 건설과 이 단지 내에 와이셔츠, 가방, 신발 등 9개 合作工場을 設置하는 데 대한 意向書를 채택한 바 있으며, 이밖에도 대략 20~30개 업체가 北韓과 經濟協力事業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經濟協力事業은 投資保障과 이에 수반되는 人的往來에 대한 身邊安全 保障 등에 관한 南北當局間 合意書 체결 등 制度的 장치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北韓이 核査察問題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냄으로 인하여 事業施行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2) 南北間 가능한 經濟協力 形態

南北韓間에 이루어질 수 있는 經濟協力の 種類를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면,

첫째, 南北韓의 兩地域이나 第3國에 대한 共同投資, 技術交流, 資源共同開發 등과 같은 직접적인 生産活動 部門,

둘째, 交通, 通信, 金融 등과 같이 商品去來 혹은 資本交流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下部構造의 共同構築,

셋째, 民間 혹은 政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現金 및 現物의 移轉, 혹은 北韓의 經濟開發을 촉진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중에서 특히, 南北韓 經濟의 條件과 資源의 賦存狀態의 차이에 바탕을 둔

資源의 共同開發은 經濟協力の 중요한 형태가 될 것인바, 南北韓 共同開發이 가능한 분야로서는 有煙炭, 鐵鋼石, 亞鉛鑛 등의 資源開發 및 共同漁撈區域의 설정을 통한 水産 分野의 合作 등이 유망하다.

南北經濟協力の 가능성을 協力地域 對象別로 볼 때, 먼저 北韓地域에서의 合作投資나 資源共同開發은 南北當局間에 投資保障, 往來者 身邊保障 등에 관한 合意書 채택을 통해 制度的 基盤이 마련되어야 가능하게 될 것이다.

板門店地域이나 非武裝地帶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공동사업은 北韓의 勞動力 移動 可能性에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政治·軍事的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시험단계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의 示範事業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經濟性을 고려한 대규모의 投資事業의 추진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非武裝地帶의 包括的 利用方案에 대한 南北間 合意와 더불어 『平和區域』 설정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經濟協力の 初期段階에서는 第3國에서의 合作이 協力事業의 經驗을 축적하고, 對內體制에 미치는 政治的·意識的 衝擊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경우 北韓의 勞動力과 南韓의 資本·技術을 결합하여 中國·러시아 등에 공동진출하는 것이 검토될 수 있으며, 그 대상분야로는 신발·섬유 등 國際競爭力이 있는 輕工業 分野와 농업, 임업, 지하자원 등 資源開發 分野의 協력이 가능할 것이다.

(3) 推進方向

南北經濟協力事業은 기본적으로 南北間에 人的·物的交流가 충분히 이루어짐으로써 相互 信賴回復과 交流의 慣例가 축적되고 協力事業의 安定성과 持續性

이 보장될 때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南北當局 間에 投資保障, 紛爭調停, 往來者 身邊保障 등에 관한 合意書 채택을 통하여 制度的 뒷받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經濟協力の 基本方向은 相互補完의 立場에서 南北韓 모두에 經濟的 利益이 보장되도록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北韓의 經濟難 타개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積極的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初期段階의 經濟協力は 紛爭의 소지가 적고 南北關係 改善의 波及效果가 크며 北韓이 수용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실시해 나갈 것이며, 이 경우 南北經濟 會談 및 民間業體間 接觸에서 의견접근을 본 地下資源 共同開發, 共同漁撈區域 設定, 觀光資源 共同開發, 輕工業 合作工場 建設, 對外共同進出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아울러 南北經濟協力事業을 촉진하기 위해, 南北協力基金을 이용한 經濟協力 資金貸出, 融資에 대한 債務保證, 損失補助 등 다각적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4) 主要事業別 推進計劃

南北韓 合作工場 建設 推進

北韓은 經濟沈滯 탈피를 위해 '84年 合營法을 제정하고 海外資本導入을 추진해 왔으나, 西方企業의 외면으로 '90年末까지 在日朝總聯과 舊蘇聯, 中國企業을 중심으로 98件만이 성사되어 조업중에 있어 남한 기업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한편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최근 勞動賃金 상승에 따른 對外競爭力 약화, 産業構造 조정 등으로 北韓과의 經濟協力에 대한 需要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南北 合作工場 건설은 南北韓 모두에게 실익을 가져다 줌은 물론, 이를 통해 南北이 서로의 經濟管理 體系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相互 信賴回復에도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南北 合作工場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南北當局間에 投資保障, 果實送金, 紛爭處理 등에 관한 制度的 保障(合意書 採擇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南北韓이 합의하는 특정지역(非武裝地帶, 北韓內 또는 中國·러시아 국경지역)에 合作工場 건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合作對象 分野는 北韓이 희망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인바, 北韓의 合營推進 現況과 北韓이 유엔工業開發機構(UNIDO)에 제시한 83個의 合作프로젝트 등을 참고로 北韓이 희망하는 合作對象 분야를 살펴보면, 대부분 大規模 投資나 尖端産業 分野보다는 自動化 機械設備, 運送設備, 生必需品 등 輸入需要가 큰 부문과 鑛産物 및 農水産物 加工 등 新興工業國의 國際競爭力이 높은 부문들이다.

따라서 1次的으로는 纖維·衣類·食品 등 北韓에서의 需要가 높고 輸出이 가능한 품목 중에서 단순임가공형태 및 소규모 투자로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合作을 추진하고, 점차 自動車·造船 등으로 合作對象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合作工場에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南韓 搬入 또는 우리 企業의 貿易網을 이용해서 世界市場에 輸出하게 될 것이나, 北韓住民의 生活向上에 도움이 되는 품목은 일부 北韓地域에서 소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地下資源 共同開發

現在 南北 공히 에너지 供給源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石炭 및 石油資源을 共同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것은 안정적인 에너지 供給體系 構築은 물론, 相互 信賴回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南北當局間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南韓 또는 北韓地域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亞鉛, 마그네사이트, 鐵鑛石, 鈾사 등을 共同開發할 경우, 상당한 輸入代替效果는 물론 世界市場으로의 輸出이 가능하여 南北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자원은 먼저 南北韓 공히 추진중에 있는 大陸棚地域 地下資源 開發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 현재 北韓의 大陸棚 開發에 참여하고 있는 第3國 企業의 持分中 一部를 우리측 企業이 인수하는 방안과 南北韓 모두가 大陸棚 鑛區로 지정하지 않은 黃海 軍事分界線 一帶(南韓 第1鑛區와 北韓 朝鮮灣 B鑛區 사이)를 共同開發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南韓의 資本과 設備를 제공하여 北韓에 埋藏量이 풍부한 石炭·亞鉛·鐵鑛石·金 등 地下資源을 共同開發하고, 그 대가로 現物 搬入 또는 國際市場 販賣를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地下資源의 加工處理 分野 協力事業도 실시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南北韓 共同漁撈水域 設定

우리나라 東·西海에는 명태, 오징어, 홍어 등 魚種의 계절에 따른 남북회유

로 漁場이 南北에 걸쳐 형성되나, 軍事分界線으로 漁場이 분단되어 雙方漁民들의 漁撈活動과 漁業資源 動態把握에 불편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共同漁撈水域을 설정, 共同漁撈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漁民들의 편의 및 소득을 증대하고 합리적 漁業資源管理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 分野에서의 南北協力은 南北經濟會談에서 의견접근을 본 바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南北韓 共同漁撈水域 설정은 먼저 南北當局間에 이 分野 合意書를 채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軍事分界線 부근의 未利用漁場에서의 共同漁撈를 중점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操業漁場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公海 및 第3國 漁場 共同進出, 水産物 加工處理 分野 合作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南北共同漁撈에 있어서 海域別 對象漁業 및 漁撈期間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며, 出漁船 規模 및 隻數 등 操業方法과 漁業紛爭 豫防處理 등 구체적 사항은 南北韓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다.

海 域 別	對 象 漁 業	對 象 魚 種	漁 撈 期 間
東 海 岸	연승 및 자망	명태, 잡어	12~2월
	기저 및 트롤	"	"
	오징어 채낚기	오징어	7~9월
西 海 岸	대형 기저	홍어, 잡어	11~3월

多者間 協力 參與

최근 世界經濟의 地域블럭화 경향이 높아지면서 東北亞에서도 地域國家間 協力體 構想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러한 經濟協力體 설립에

南北이 共同參與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은 最近 ADB, IBRD 등 國際經濟機構로부터의 자금도입과 가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南北韓의 유엔加入으로 國際經濟機構를 이용한 間接協力 展望은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多者間 協力事業의 일환으로서 UNDP가 추진하고 있는 豆滿江流域 開發計劃은 개발대상지역 및 개발방식 등 綜合開發計劃案을 '93年末까지 수립할 목표로 참여국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豆滿江開發事業은 이지역이 풍부한 자원과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와는 交易, 投資 등 상호보완적 協力の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아니라, 極東 및 유럽지역으로의 經濟性 있는 수송로 및 진출거점 확보와 北韓의 나진, 先鋒(雄基)地域 開發을 통한 南北協力促進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東北亞國家間 協力增進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방침이다.

第3國에 대한 南北韓 共同進出

南北의 共同對外進出은 '91年 12月 채택된 『南北基本合意書』에도 규정된 내용으로 南韓의 經濟實相이 北韓에 직접 전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北韓이 실제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經濟協力の 初期段階에서 南北韓이 이를 통하여 公동의 實益을 추구하고 協力事業의 關係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南北韓이 공동으로 中國·러시아 등지에 진출함으로써 장차 東北亞 經濟協力體制의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南北이 共同으로 진출 가능한 分野는 우리側의 資本과 技術, 北韓의 勞動力을 결합하여 시베리아地方의 소금, 코크스, 가스開發에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中國·러시아·北韓의 接境地域인 豆滿江河口에 生必需品工場을 合作建設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겠다.

科學技術 分野 交流協力 增進

앞으로의 세계는 理念的 大결상태로부터 技術的 優위요소를 앞세운 經濟的 競爭으로 變化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南北韓이 이러한 狀況變化에 능동적으로 對處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交流 協力を 한층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計劃期間中 이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段階的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기 위해 우선 '95 冬季아시아競技大會를 유치한 北韓이 사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 도핑기술에 대한 전수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氣象 및 科學技術 관련정보의 교환·이용, 科學技術者 장단기 교류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남극 資源共同開發 研究를 위해 우리가 설치한 세종기지에서 共同研究를 수행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는 등 이 분야에서의 交流協力を 다양화해 나갈 것이다.

(5) 段階別 推進計劃

1 段階로 먼저 南北當局間에 合意書 채택을 통하여 經濟協力에 대한 制度的 장치를 마련한 후, 이를 바탕으로 軍事分界線 부근에 共同漁撈區域 設定 및 共同操業, 남포 등 南北이 합의하는 지역에 示範的 合作工場 건설, 大陸棚地域 共同探查, 러시아 遠東·시베리아 지방의 資源共同開發을 위한 기초 및 타당성 조사 등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UNDP의 豆滿江河口 開發事業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며, 北韓이 國際經濟機構 가입을 희망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2 段階로는 南北海域에서의 共同漁撈作業과 海外共同漁撈 進出, 南北韓 地域內 地下資源 共同開發 및 北韓의 先鋒(雄基) 自由經濟貿易地區 合作投資를 추진하고, 전단계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 極東·시베리아 지방의 資源共同開發과 東南亞·中南美 등 여타 지역의 海外資源開發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北韓과 협의·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金融分野 協力方案을 강구하는 한편, 南北共通 工業規格 標準化 作業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段階에서는 石炭·油類·電力 등 에너지 분야와 食糧 분야의 南北連繫 供給體系 구축과 自動車·造船·重化學工業 분야의 合作을 추진하며,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건설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다. 南北韓 環境保全을 위한 共同協力

(1) 推進現況

최근 環境問題는 軍備縮小와 더불어 世界平和를 희구하는 全人類의 보편적 관심사이자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우리 政府는 지난 '82年 以後 環境問題 解決을 위한 南北間 協力を 꾸준히 제의하여 온 결과, 『南北基本合意書』에 環境 分野 協력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北韓은 '86年 4月 環境保護法을 제정하여 環境保護를 추진하고, 自然生態系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南北基本合意書』 채택 이전까지는 우리의 環境分野 協力提議에 대해서 否定的 立場으로 일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측의 環境分野 對北提議〉

- | | |
|--------------|--|
| 1982. 2. 1 | 20個 示範實踐事業 제의시 非武裝地帶 內 自然生態系 共同調查研究 제의 |
| 1985. 5. | 第15次 유엔環境機構(UNEP) 總會에서 非武裝地帶 生態系 調査 제의 |
| 1986. 11. 28 | 南北 水資源 當局會談 제의 |
| 1992. 6. 13 | 유엔環境開發會議(UNCED)時 非武裝地帶 生態系 共同調查 提議 |

(2) 推進方向 및 計劃

1 段階로 南北間 環境分野 合意書 채택의 바탕 위에서 南北韓 生態系 및 環境分野 情報資料의 교환체계를 수립하고, 自然生態學者 등 環境關係 人士의 相互交流, 環境關聯 國際學術會議에의 南北共同參加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合意書 채택 이전이라도 '92年 6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環境開發會議에서 우리측이 제의한 非武裝地帶 生態系 共同調查 등 示範的 事業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段階에서는 『南北韓 自然生態系·環境 調査團』을 구성하여 白頭山·漢拏山 地域의 共同調查를 실시하고, 南北韓 地域을 연결하는 水資源의 共同管理·利用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3 段階에서는 南北이 共同으로 環境 管理·保全對策을 강구하는 한편, 日本·中國 등과 함께 『東北亞 環境協力機構』 설립을 추진하는데 남북이 공동

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라. 南北韓 交通·通信網의 連結·擴充

南北韓間 交通·通信網의 連結·擴充은 南北交流協力を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土臺 構築과 統一 後를 대비한 長期的인 國土綜合開發計劃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南北當局間에 通行·通信에 관한 合意書 채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바탕 위에서 南北間 鐵道·道路의 복구·연결, 海路·航空路의 개설, 電信·電話網 연결, 郵便物 교환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1) 南北交通網 連結

鐵道 連結

南北間 連結이 가능한 주요 鐵道로 京義線(문산~봉동간 20km), 京元線(신탄리~평강간 31km), 金剛山線(철원~내금강) 등을 들 수 있으나 京元線과 金剛山線의 경우 北側地域의 상당 구간이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아 사실상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復舊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段階로 京義線을 南北韓 合意下에 복구·연결하고, 2段階로 京元線과 金剛山線의 복구를 검토하는 한편, 國土綜合開發 次元에서의 교통망 구축계획을 南北共同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南北鐵道 連結 推進計劃〉

段階別	路線名	南韓側		北韓側	
		區間	距離 (km)	區間	距離 (km)
1段階	京義線	문산~장단	12.1	장단~봉동	7.3
2段階	京元線	신탄리~월정	16.2	월정~평강	14.8
	金剛山線	철원~금곡	24.5	금곡~내금강	未詳

道路連結

주요 남북연결 도로는 國道 1號線(서울~평양), 3號線(남해~초산), 7號線(부산~은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중에서 國道 1號線의 경우 南北이 합의만 하면 바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황에 있다.

남북도로 연결은 먼저 南北交通網의 근간이 될 國道 1, 3, 7號線을 연결하고 交通需要의 증대에 따라 國道 5, 31, 43號線으로 확대시켜 나가며, 이와 함께 長期的인 國土綜合開發 차원에서의 南北 交通網 構築計劃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이다.

남북도로 연결에 대비하여 우리측 지역 道路의 擴張 鋪裝工事を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南北韓 합의하에 北韓地域 工事 및 道路網 連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미 행주대교—자유의 다리간 『自由路』공사가 착공되어 '92年 8月中 행주대교—오두산간 1 단계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다.

〈南北道路 連結 推進計劃〉

段階別	路 線 番 號	區 間	延長 (km)	所要豫算 (백만원)	效 果
1段階	國道 1號線	自由의 다리~板門店(4車線 鋪裝)	11.2	15,500	서울~평양 通行 원활
	國道 3號線	신탄리~休戰線 (2車線 鋪裝)	15.2	11,300	南北의 中部 內陸 通行
	國道 7號線	統一展望臺~休戰線 (2車線 鋪裝)	3.2	2,500	金剛山 開發 및 觀光
	地方道 3159 號線	행주대교~자유의 다리 (4~6車線 鋪裝)	46.6	292,300	南北의 西部內陸 通行
2段階	南北韓 合意下에 國道 1, 3, 7號線 道路의 南北連結				
3段階	南北間 交通需要의 增大에 따라 國道 5, 31, 43號線 連結 및 新道路網 構築				

海路 開設

南北間 人的往來와 物資交易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旅客運送을 위한 沿岸航路와 交流物資의 海上運送을 위한 定期貨物 沿岸航路의 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南北間 合意書 채택을 통한 定期航路 개설을 적극 추진하며, 定期航路 개설 전이라도 直交易을 위한 不定期航路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南北間 航路는 인천과 해주·남포, 포항·동해와 원산 등 사이의 航路를 開設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며, 南北間에 금강산—설악산 自由觀光地域 開發이 추진된다면 동 지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 운행도 가능할 것이다.

航空路 開設

南北間 航空路 개설은 우선 當局間 合意書 채택을 통해 金浦國際空港과 平壤순안 비행장간의 直航路를 개설하고, 定期航空路線을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인바, 여기에는 ICAO를 통해 협의중인 東京~서울·平壤~北京을 잇는 航路 개설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기항공노선 개설 이전이라도 필요시 不定期航空便을 운항토록 하고, 南北 航空關係者 接觸을 확대하며, 나아가서는 南北間 管制協調, 航空機 地上 操業의 상호지원까지 이루어지도록 할 計劃이다.

(2) 南北通信網 連結

電信·電話網 連結

'45年 9月 13日 南北間 電信·電話가 불통된 이래 南北間에 通信斷絶이 계속 되어 오던중, '71年 9月 22日 南北赤十字會談 준비를 위하여 斷絶 後 처음으로 남측 『自由의 집』과 북측 『板門閣』間에 直通電話 回線이 연결되었다.

현재 南北間에는 南北對話用 直通電話 26回線이 운용중이며(『南北調節委』用 1回線 不通), 『平和의 집』~『統一閣』間에 南北電話 連結路線이 160回線 설치되어 있다.

南北韓間 電信·電話網 연결은 南北 通信에 관한 合意書 체결을 바탕으로 通信當局間 실무협의를 통하여 실시해 나가되, 南北韓間 回線構成의 制限성과 回線規模를 감안, 단계 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既存 有線施設을 최대한 활용하여 南北韓 通信網을 조속히 연결하도록 하고, 板門店의 『南北連絡事務所』('92.5.18 구성) 내에 電話交換室을 설치·운영하여 南北通信望 連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 段階로 南北 通信當局이 협의하여 長期的인 疏通對策을 마련하는 한편, 광케이블 포설, M/W 설치 등을 통하여 南北 連結回線의 증설 및 南北 通信網을 地方單位까지 확대하고 자동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필요시 우리측의 技術·裝備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郵便物 交換

'45年 8月 15日 祖國光復과 함께 南北이 分斷되었으나 郵便物 交換은 '45년부터 '50년까지 165회에 걸쳐 280여만통이 교환되어 오다가 6.25 動亂으로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政府는 지난 '71年 南北赤十字會談 개최 이래 南北間 郵便物 交換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으나 南北間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현재 萬國郵便聯合(UPU) 회원국 169個國中 유일하게 北韓과의 郵便物 交換만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郵便物 交換은 南北 通信에 관한 合意書 채택을 통하여 추진하되, 여타 通信 開放에 앞서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板門店 『南北連絡事務所』 내에 郵便物 交換所를 설치하여 南北 郵便交流가 定例化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郵便料金 精算方案도 雙方이 협의하여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마. 觀光 分野의 交流協力

(1) 推進現況

南北韓은 地理的·氣候的·歷史的 特性으로 인해 풍부한 觀光資源과 觀光名所를 가지고 있으나 分斷 以後 지금까지 南北間의 觀光交流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겠다.

〈北韓의 觀光事業 推進現況〉

北韓當局은 관광을 “낭비적이고 안일한 생활을 추구케 하는 비생산적인 것”이라는 否定的 認識과 함께 북한사회의 외부 노출, 불필요한 外來思潮의 流入 등을 염려한 나머지 관광사업의 對外開放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80년대 접어들어 外貨收入의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대외 관광사업에 관심을 돌리면서 觀光資源의 개발과 관련시설의 확충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86년에 『國家觀光總局』이 설치되어 최초로 홍콩·호주로부터 소규모 해외관광단을 유치하였으며, 다음해에는 9대 觀光地의 重點開發을 추진하고 『世界觀光機構』(WTO)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日本—蘇聯—北韓—中國을 연결하는 極東地域 循環 觀光코스를 개발하고, 1989년에는 在美僑胞와 合作으로 『金剛山國際觀光會社』를 설립하여 觀光事業을 추진해 오고 있다.

北韓訪問 外國人 수는 연간 10만 정도이며, 이중 純粹 觀光客은 3만으로 추정되는바, 北韓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觀光便宜施設 不足 등으로 觀光事業의 실질적인 성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南北韓間에는 '89年 1月 현대그룹과 北韓 조선대성은행 간에 金剛山地域 觀光 資源 共同開發에 합의하고, '91年 3月 베를린 國際觀光博覽會에 南北代表가 함께 참가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北側과의 觀光交流 협의를 위한 신청이 증가하는 등 觀光交流協력이 모색 단계에 있다.

(2) 推進方向

南北 觀光交流協力は 우선 當局間 合意書 채택을 통해 制度的 裝置를 마련한 후, 北韓의 호응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토록 하고, 韓國 觀光公社, 民間事業者의 對北接觸을 통하여 交流基盤을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推進計劃

1 段階로 먼저 合意書 채택의 바탕 위에서 觀光 관련 國際會議 및 博覽會에 南北의 共同참가를 추진하며, 南北韓 訪問 外國人 觀光客의 相互 直接往來를 허용토록 하고 海外觀光客 유치를 위한 共同弘報·宣傳活動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段階로 南北韓 觀光 관련 人士의 상호초청을 통하여 南北韓 主要觀光地 踏査 및 交流協力事業을 논의토록 하며, 雪嶽山·金剛山, 板門店·非武裝地帶 등 특정지역을 自由觀光地域으로 선정하여 공동개발을 실시하는 한편, 板門店 등 主要 通過支點에 觀光案内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南北韓 住民間 觀光目的의 相互交流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나아가 3 段階에서는 旅行業, 觀光호텔業 등 관광사업체의 合作投資를 추진하며 南北韓間 觀光資源의 공동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南北 經濟社會共同體 示範都市로서의 『平和市』 建設

가. 事業의 背景 및 必要性

'88年 10月 18日 盧泰愚 大統領은 UN 總會 特別演說에서 “北韓이 당장 문을 열고 開放을 실현하면서 統一의 時期를 앞당길 수 있는 상징사업으로 休戰線 非武裝地帶 안에 『平和市』를 건설”하자는 構想을 闡明하였다.

또한 '89年 9月 11日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大統領 國會特別演說에서는 “共同事務所를 비롯한 南北聯合의 기구와 시설을 非武裝地帶 안에 平和區域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으며, 平和區域은 점차 『統一平和市』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平和市』는 南北間의 자유로운 人的·物的交流과 다각적인 相互接觸을 위한 中間 媒介的 據點空間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南北韓 住民이 특정한 공동의 생활공간에서 文化, 學術, 體育, 宗教 등 각 분야에 걸친 交流·接觸을 실시함으로써 南北社會의 여러 요소들을 포용하고 『한민족공동체』적 삶의 회복·발전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平和市』 내에 『南北聯合』의 共同事務所 등 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統一過程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主要 事業內容

『平和市』 건설사업은 非武裝地帶 내의 일정지역에 都市로서의 自足的 機能을 갖춘 人口 30~50萬名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여 그 안에 다음과 같은 施設들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平和市内 主要 收用施設〉

- 南北韓間 人的·物的 交流의 窓口
 - 離散家族 만남의 廣場 및 家族相逢을 위한 便宜施設
 - 南北共同 自由市場, 物資流通施設 등
- 民族化合과 民族固有 傳統文化의 계승·창달을 위한 文化空間
 - 共同競技場 등 體育施設, 共同集會所, 展示·公演場 및 映畫 觀覽場
 - 民族文化館, 歷史博物館, 民俗村 등
- 南北學術交流 및 共同研究 施設
 - 環境公害問題研究, 非武裝地帶 生態系 研究, 南北言語 研究, 教科書 共同編纂 등을 위한 기구
 - 南北學術情報資料센터 등
- 統一過程에서 中核的 役割을 담당할 共同機關
 - 『南北聯合』의 共同事務處, 南北會談場 등

다. 推進方向 및 計劃

政府는 『平和市』를 南北韓의 이질적 요소를 포용하고 융화하여 民族共同體의 삶의 回復과 發展을 도모할 수 있는 和解와 和合의 都市로 건설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여기에 첨단의 都市基盤을 갖추되 非武裝地帶 內의 自然資源을 잘 보전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하며, 非武裝地帶가 東西 冷戰體制의 最後 地域임을 감안하여 世界平和와 和合에 기여할 수 있는 國際的 開放都市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먼저 南北韓 當局間 합의하에 非武裝地帶 內 適正地域에

『平和區域』을 설정하고, 各 收容施設을 順次的으로 유치하여 『平和市』로 개발해 나가며, 같은 방법으로 立地的 性格을 감안하여 第2, 第3의 『平和市』를 건설함으로써 非武裝地帶를 南北間 緩衝地帶化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측은 平和市 건설에 대한 南北間 合意에 앞서 『自由路』 건설, 『統一동산』 조성 등 일부 連繫事業을 先導的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平和市 建設 連繫事業 推進計劃 및 現況〉—

- 『自由路』 建設(6~4車線, 全長 46.6km)
 - 第1段階 工事(행주대교~오두산, 全長 29km)는 '90年 10月 착공 ~ '92年 8月까지 완공(예정), 第2段階 工事(오두산~자유의 다리, 全長 17.6km)는 '91年 10月 착공, '93年 12月 완공(예정)

 - 『統一동산』 造成(總敷地 規模 170萬坪)
 - 이중 『統一展望臺』는 '92年 8月까지 준공 예정

 - 新都市 建設
 - 自由路邊에 南北間 人的·物的交流의 實質的 窓口役割을 담당할 수 있는 適正規模의 示範的인 新都市 건설
- ※ 현재 실시중인 事業 以後의 平和市 建設은 南北關係 進展에 따라 伸縮的으로 조정·추진함.

第 2 節 南北交流協力の 制度化 基盤造成 및 支援制度 擴充

1. 南北當局間 合意書 採擇 및 實踐機構 運營

가. 推進背景

南北 雙方은 第5次 南北高位級會談('91.12.10~13, 서울)에서 우리측이 제의한 『基本合意書』와 『3通合意書』, 북측이 제의한 『不可侵宣言』의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로 묶은 『南北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이하 『南北基本合意書』)를 채택하였다. 이어 '92年 2月 19日 第6次 南北高位級會談(平壤)에서 『南北基本合意書』와 함께 『南北高位級會談 分科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가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92年 3月에 政治, 軍事分科委員會와 더불어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가 구성되어 交流協力에 관한 『附屬合意書』 採擇과 部門別 共同委員會 구성·운영문제 등을 협의하게 되었다.

아울러 第7次 高位級會談(서울)에서의 南北合意에 따라 '92年 5月 18日 經濟와 社會文化 分野의 2개 『共同委員會』와 『南北連絡事務所』가 구성되어 '92年 9月까지 附屬合意書가 채택·발효되면 본격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나. 推進方向 및 計劃

政府는 본 계획기간중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와 經濟 및 社會文化 交流·協力共同委員會를 南北間 交流協力對策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해 나갈 기본적인 機構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며, 여기에서 分野別 合意書를 단계적으로 채택해 나감으로써 交流協力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南北基本合意書』에 따르면 分科委員會의 機能은 同 合意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具體的 對策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南北交流·協力分科委에서는 離散家族 등 人道的 問題와 通行·通信, 經濟, 社會文化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여 남북 당국간 『附屬合意書』를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南北交流協力 推進基盤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共同委員會에서는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附屬合意書』의 직접적인 實踐과 관계되는 投資保障, 清算決濟, 著作權 保護 등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의 『細部合意書』를 남북간 협의·채택하고 이에 따라 南北交流協력을 실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南北交流協力 關聯法令의 整備

'90年 8月 1日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法律』과 『南北協力基金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우리는 分斷 以後 처음으로 南北交流協력을 法的으로 보장·지원하는 制度的 裝置를 갖추게 되었다.

향후 南北關係가 정상화되고 交流協력이 본격화될 경우 이를 반영한 法制度의 조정과 內容의 보완이 필요할 것인바,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附屬合意書와 細部合意書 채택에 맞춰 우리의 대내 법·제도를 조정해 나가는 한편, 南北交流協力 본격화시 예상되는 紛爭 發生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法律의 事前研究 作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南北協力基金 擴充

가. 推進現況

政府는 '91년부터 南北交流協力 촉진을 위해 南北協力基金을 조성·운영해 오고 있다. 운영 첫해인 '91년에는 政府出捐金으로 250億원을 조성하여 이중 22억 1,800만원을 南北韓 蹴球·卓球 單一팀 行事와 南北交易의 損失補助金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92年度에는 400억원이 政府 豫算에 계상되어 있다.

〈南北協力基金 支援實績 (1991年)〉

(단위 : 千원)

分野別	事業內容	支援額
南北體育協力事業 支援	-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單一팀 構成 參加	164,000
	- 世界青少年蹴球大會 單一팀 構成 參加	786,000
南北交易 損失補助	- 對北쌀 搬出代金 未收에 대한 損失補助	1,268,000

나. 基金造成 方向 및 計劃

南北의 經濟力 隔差를 감안할 때, 交流協力 활성화를 위해서는 南北協力基金의 支援 擴大가 불가피하며, 南北關係 狀況變化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상당 규모의 豫備的 基金을 확보할 必要性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政府는 계획

기간중 南北協力基金의 造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이렇게 조성된 協力基金은 장차 南北統合時 소요될 統一費用에 대비하여 統一基金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南北協力基金의 支援對象은 초기단계에는 體育·學術·文化交流 支援, 經濟交流協力 損失補助 등 非償還性 分野를 중심으로 지원될 것이나, 南北交流協力 활성화 단계에 맞춰 점차 經濟交流協力 融資 등 償還性 支援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基金의 財源調達 方案으로 非償還性 支援은 政府出捐金과 基金受益金 등으로 충당하고, 償還性 支援은 政府出捐金과 債券發行을 통한 金融市場調達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4. 北韓關係 情報資料의 段階的 開放

政府는 北韓關係 情報資料의 公開가 南北交流協力 活性化의 前提가 된다는 인식에서 資料開放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開放對象 資料로는 各 分野 文獻資料, 新聞·雜誌 등 定期刊行物, 映畫·音樂 등 視聽覺資料, TV·라디오 등 電波媒體資料 등이 포함될 것이다.

南北情報資料 開放은 먼저 北韓의 내부사정으로 相互開放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측이 선도적으로 개방을 실시한 후 北韓의 개방을 유도해 나가되, 北韓側 資料가 住民思想統制의 主要手段임을 감안하여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開放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방된 北韓 情報資料에 대한 解說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國民들의 理念的 混亂을 예방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南北間에 合意書 채택을 통하여 板門店에 資料交換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방송프로그램 상호교환 등 各 分野 情報資料 交換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5. 北韓의 經濟·社會制度 研究 強化

北韓과의 交流協力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단 이후 異質化가 심화된 北韓의 經濟·社會制度에 대한 研究가 필요한바, 이는 北韓關係 情報資料 開放과 연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研究對象 分野로는 北韓 經濟制度和 관련해서는 所有制度, 租稅, 貨幣·金融, 物價 및 價格制度, 賃金體系, 企業管理, 換率 등 분야를 들 수 있고, 社會制度 關聯分野는 勞動·保險·年金 등 社會保障制度, 教育制度, 大衆媒體, 藝術, 宗教, 體育 분야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統一에 대비한 南北 經濟·社會共同體 모델 설정을 위하여 通信, 에너지, 國土開發 등 분야의 연구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北韓研究 人力的 擴充을 위하여 政府出捐 研究機關과 大學의 북한관련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및 共同委員會 등에서의 南北當局間 합의를 바탕으로 學術研究 目的의 南北學者間 交流·協力を 積極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政府와 學界 및 研究機構間的 긴밀한 連繫體制 構築을 통하여 北韓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상호교환과 집대성을 추진하고, 이 分野의 研究成果를 政府 政策樹立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

또한 러시아·東歐圈 北韓專門家の 北韓研究 成果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독일의 統一經驗에 대한 研究도 政策的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第 5 章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의 後續措置

第 1 節 計劃의 中間評價 및 修正·補完

南北交流協力は 우리 政府와 國民의 일방적인 추진으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北韓과의 협의 및 합의하에 추진될 수밖에 없다. 南北間에는 '92年 2月 19日 제6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南北基本合意書』와 『分科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가 발효되어 현재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가 구성·운영중이며, 5月에는 部門別 共同委員會가 구성되었다. 本 部門計劃은 이러한 分科委·共同委에서의 當局間 合意 등 南北關係 進展 및 周邊情勢의 變化에 따라 計劃推進의 優先順位가 조정되고, 경우에 따라 計劃의 全面 修正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政府는 이러한 가변성을 고려하여,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 評價委員會』를 구성·운영하는 등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부응해 나갈 計劃이다.

第 2 節 南北 經濟社會共同體의 中長期發展計劃 樹立

政府는 第7次 5個年計劃 期間을 통해 그 基盤이 조성될 南北 經濟社會共同體의 中長期綜合發展計劃을 수립함으로써 南北 經濟社會統合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南北韓 經濟社會 現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研究事

業을 추진하며,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南北韓 經濟社會의 成長潛在力을 충분히 발휘시키면서 經濟社會共同體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中長期發展計劃을 第7次 5個年計劃 期間의 中盤期까지 수립할 것이다.

第7次 5個年計劃 期間의 後半期에는 이러한 中長期發展計劃에 따라 南北 經濟社會共同體 形成 與件造成 및 示範事業들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國土開發計劃 등에도 南北韓 經濟社會共同體 中長期發展計劃을 반영시키되, 실제 추진은 財源調達을 감안해 南北交流協力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附 錄〉

-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 南北高位級會談 分科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 南北交流·協力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 第7次 南北高位級會談 合意文
- 南北交流協力 現況
- 南北韓 主要指標 比較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

정을 준수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 북 불 가 침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

제를 협의·추진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 14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 15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16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17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 18 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 19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 20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 21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 22 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 23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 24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 25 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
- ②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③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 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 ③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 3 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북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 사항을 협의·실천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무원 총리 연형묵

제 7 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에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들의 성과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남북 쌍방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제1장 남북화해분야의 이행기구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 ① 남북화해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 ③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남

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킨다.

2. 남북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1992년 5월 18일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각기 자기측 구성원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3.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18일자로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할 남북연락사무소 자기측 소장과 부소장 및 연락관들의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무소 운영을 개시한다.
4. 불가침 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1일까지 작성하고, 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5일까지 작성한다.
5. 남북합의서 이행에 대한 첫 선물을 민족앞에 내놓으려는 염원에서 올해 8.15 해방 47돌을 계기로 각기 노부모 100명과 예술인 70명, 그리고 70명의 기자·지원인원들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교환하도록 쌍방 적십자단체들에 위임한다.
6. 각 분과위원회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다음번 회의날짜와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4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1992년 5월 12일(화)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 ② 제4차 남북정치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19일(화)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 ③ 제4차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25일(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④ 제4차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30일(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7.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1992년 5월 7일

서 을

남북교류협력 현황

1. 남북주민간접촉('89. 6~'92. 6)

○ 총 괄

건/(명)

연 도 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36 (70)	21 (22)	-
1990	235 (687)	206 (652)	54 (368)
1991	753(2,195)	685(2,030)	244(1,148)
1992	477(1,081)	394 (840)	80 (208)
계	1,501(4,033)	1,306(3,544)	378(1,724)

○ 분 야 별

건/(명)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이 산 가 족	507 (597)	497 (587)	179 (213)
학 술	221(1,094)	200(1,035)	47 (663)
문 화	123 (577)	91 (525)	12 (259)
종 교	85 (319)	72 (279)	17 (144)
체 육	45 (114)	42 (109)	8 (48)
경 제	307 (702)	239 (499)	64 (131)
언 론 · 출 판	72 (210)	53 (157)	19 (84)
관 광 · 교 통	44 (128)	41 (108)	16 (64)
기 타	97 (292)	71 (245)	16 (118)
계	1,501(4,033)	1,306(3,544)	378(1,724)

2. 남북왕래('89. 6~'92. 6)

○ 북한방문

명/(건)

연 도 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1(1)	1(1)	1(1)
1990	199 (7)	187 (6)	183 (3)
1991	244(12)	243(11)	237(10)
1992	139 (8)	118 (4)	118 (4)
계	583(28)	549(22)	539(18)

○ 남한방문

명/(건)

연 도 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	-	-
1990	306 (5)	306 (5)	291 (4)
1991	175 (3)	175 (3)	175 (3)
1992	103 (3)	93 (2)	93 (2)
계	584(11)	574(10)	559 (9)

○ 10대 주요품목 반출입 승인현황

반 입		반 출	
품 목	금 액 (천\$)	품 목	금 액 (천\$)
아 연 피	93,023	LDPE(농업용비닐)	6,829
시 멘 트	37,579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6,396
금 피	25,269	나일론직물	5,963
빌 레 트	18,255	테 트 른 솜	2,450
열 연 코 일	16,492	양말편직기	2,188
냉 동 명 태	14,777	냉 연 강 판	2,102
무 연 탄	13,719	백 설 탕	2,078
냉 동 조 기	8,764	쌀	1,750
한 약 재	7,861	플라스틱가소제	1,426
감 자	6,479	칼 라 TV	1,340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

1990년 현재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한 국 : 북 한
면 적	천km ²	99.3	122.1	1 : 1.2
인 구	천명	42,869	21,720	2 : 1
인 구 증 가 율	%	0.93	1.61	—
경제활동인구	천명	18,487	9,834	1.9 : 1
경제활동참가율	%	60.0	67.8	—
G N P	억불	2,379	231	10.3 : 1
1 인 당 GNP	불	5,569	1,064	5.2 : 1
경 제 성 장 륜	%	9.0	-3.7	—
대 미 환 율	원	707.97	2.14	—
무 역 규 모	억불	1,348.6	46.4	29 : 1
재 정 규 모	"	388	166	2.3 : 1
군 사 비 지 출	"	97.3	49.6	2 : 1
경 지 면 적	만정보	210.9	214.1	1 : 1
식량작물생산량 (정곡기준)	천톤	6,635	4,812	1.4 : 1
발전설비용량	만 Kw	2,102	714	2.9 : 1
석 탄 생 산 량	만톤	1,722	3,315	1 : 1.9
철 도 총 연 장	km	6,435	5,045	1.3 : 1
도 로 총 연 장	"	56,715	23,000	2.5 : 1
자동차보유대수	만대	339.5	26.4	12.9 : 1
항만하역능력	만톤	22,435	3,490	6.4 : 1
항 공 기 보 유	대	179	18	9.9 : 1
전 화 회 선 수	만회선	1,534	40	38.4 : 1

第7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

1992年 7月 25日 印刷
1992年 7月 31日 發行

發行處 統 一 院
交流協力局
(☎ 720-2145)
印刷處 進明印刷公社

(非賣品)

